

문서번호 : 2020-73호

일 자 : 2020년 7월 23일

수 신 : 기업체 대표

참 조 : 총무·회계·관리 담당부(과)장

제 목 :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 지원사업 실시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 신설되어 기존의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지 않는 지게차인 경우에도 지게차 교육을 이수한 자만 운전 가능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2021. 1. 16 시행 예정입니다.

3. 진천상공회의소에서는 회원사 대상으로 사고예방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으신 기업에서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송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 지원사업**

나. 시 간 : **총 12시간**(이론 6H + 실기 6H)

다. 교육장소 : 생거진천중장비학원(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6길 41-1)

라. 신청자격 : 재직근로자

마. 지원사항

순	구 분	근로자수	지원인원	상의지원금(1인기준)	기업부담금(1인기준)
1	당연회원	100명 이상	5명	15만원	8만원
		20명 이상	3명		
		20명 미만	1명		
2	임의회원	해당없음	1명	15만원	8만원
3	비회원	해당없음	1명	3만원	20만원

바. 교 육 비 : **진천상공회의소 특별가(230,000원)**, 생거진천중장비학원 정가(330,000원)

사. 교육이수효력

(1) 1종 운전면허 소지자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2) 2종 운전면허 및 면허미소지자 : **교육 이수증 발급**

아. 제출서류

(1)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2) 신청기업 **고용보험가입자명부**

※ 제출방법 : 이메일(5375900@naver.com)로 송부(선착순마감)

자. 기타사항

- 참가신청서 마감 후 교육일정 등 세부사항 안내 예정

※ 불 입 :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1부. 끝.

진천상공회의소 회장 왕 용 래

